

# 쿨투라 운영규정

제정일 2012. 7. 1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산학협력단)의 학교기업 쿨투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쿨투라는 학생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, 산학연계 교육사업의 기능과 바른 먹거리의 생산, 판매, 용역 제공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수행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쿨투라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비알콜음료개발 및 판매
2. 서양음식 개발 및 판매
3. 한식음식 개발 및 판매
4. 케이터링사업
5. 화훼업
6. 조리 교육
7. 웨딩서비스업
8. 리사이클숍운영
9. 업태, 업종과 관련된 전공의 실습
10. 기타 쿨투라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

## 제2장 조직 및 임무

**제3조(조직)** 쿨투라는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제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타 직제와 겸직 가능하다.

- ① 대표이사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.)
- ② 팀장 및 사업담당
- ③ 연구원
- ④ 운영위원회

**제4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의 임명에 관련한 사항은 「산학협력단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-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
1. 사업계획 수립
2.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
3.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
4. 기타 쿨투라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5조(팀장 및 사업담당)** ① 쿨투라는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인의 팀장과 1인 이상의 사업담당을 둘 수 있다.

② 팀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쿨투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관장한다.

③ 사업담당은 팀장을 보좌하여 쿨투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.

**제6조(직원, 매니저)** ① 쿨투라는 효과적인 제작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 및 매니저를 둘 수 있다.

② 학교기업 쿨투라 채용직원 및 매니저의 처우는 「산학협력단 취업규칙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운영위원회)** ① 쿨투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「산학협력단 운영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1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쿨투라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쿨투라 운영에 관련한 중요사항

## 제3장 사업운영

**제8조(운영계획 및 결과보고)**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목표, 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산학협력단의 협의를 거쳐 운영을 위임받은 스쿨 원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② 시행에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혹은 쿨투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다.

③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전 목표대비 실적,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산학협력단의 협의와 운영을 위임받은 스쿨 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운영세칙)** 쿨투라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기관의 법령과 「산학협력단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